안전관리규정 세부작성지침(제4조 관련)

1.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

가. 조직도

o 대표자를 정점으로 한 방사선원 및 사용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된 안 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조직도의 형태로 도시한다.

나. 직무

- o 대표이사, 부서장,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. 다만,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직무를 분리하여 기술한다.
- 2.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·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

가. 구매

- o 방사선원의 구매·인수·인계·저장절차를 기술한다.
- o 구매요구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 양식, 작성방법 및 승인 절차를 기술한다.

나. 사용

- o 방사선원의 반입·반출·인수·인계·승인절차를 기술한다.
- o 방사선원을 사용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을 기술한다.
- o 밀봉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누설점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다.

다. 판매

- o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허가자의 경우에는 운반을 포함한 방사선원의 판매 및 승인절차를 기술한다.
- o 방사선원을 판매 및 운반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을 기술한다.
- o 구매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용·운영·보수 및 관리방법이 포함된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o 판매한 방사선원의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.

라. 생산

- o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자의 경우에는 생산단계마다의 관리절 차를 기술한다.
- 3.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·보 관·운반·처리·배출·저장·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

가. 절차

- o 분배·보관·운반·처리·배출·저장·자체처분 및 인도의 각각에 대한 취급 및 승인절차를 기술한다.
- 나. 기술기준
- o 분배·보관·운반·처리·배출·저장·자체처분 및 인도의 각각에 대한 취급기준을 기술한다.
- 4. 방사선량률·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가. 측정
 - o 방사선량률의 측정방법,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 - o 방사능오염의 측정방법,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 - o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방법,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나. 기록 및 보존
- o 측정결과의 기록사항 및 그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o 기록양식을 첨부한다.
- 5.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·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
 - 가. 보관 및 관리
 - o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장소 및 비치장소를 기술한다.
 - o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점검방법,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나. 교정
- o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·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6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21호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8호 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대상을 각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.
- 6의2.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 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가. 피폭방사선량의 평가
- o 피폭방사선량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o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 특이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나. 개인선량계의 관리
- o 개인선량계의 지급 및 회수 등 관리절차를 기술한다.
- o 보조선량계의 경우에는 비치장소와 점검절차 및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7.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- o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0 교육훈련의 시기, 과목 및 시간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o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o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8.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 - o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.
 - o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시기, 방법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.
 - o 가능하다면, 전담의료기관의 명칭, 위치 및 담당의의 신상명세를 기술 한다.
 - o 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9.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 - 0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.
 - o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10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가. 기록
 - o 기록사항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.
- 나. 비치
- o 기록장부의 비치장소 및 보존장소·기간을 기술한다.
- 11.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
 - o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이에 대비한 응급조치,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.
 - o 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다.
 - o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.
- 12.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·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
 - o 분실·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.
 - o 분실·도난 등의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 한다.
 - o 사고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 대하여 기술한다.
- 13.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
 - o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한다.
 - o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의

내용을 기술한다.

- 14.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
 - o 진료를 목적으로 방사선기기를 인체에 사용하는 사업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.
 - 품질관리절차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
 - 취급절차서를 구비하여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
 - o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 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.
 - o 「원자력안전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이외에 별도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·외의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다.